##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77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민병덕·이훈기·한창민

김병기 · 위성곤 · 신장식

김한규 · 김남희 · 이수진

박희승 · 김성환 · 김남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 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 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

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 법률 제 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 한책임회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유한회사"를 각각 "유한회사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한회사"를 "유한회사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 1                |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u>주</u>  | <u>주</u>         |
| <u>식회사 및 유한회사</u> 를 말한 | 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  |
| 다.                     | <u>임회사</u>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                  |
|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        |                  |
| 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        |                  |
| 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        |                  |
| 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      |                  |
| 사를 받아야 한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 3                |
|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                  |
|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
| 다만, 해당 회사가 <u>유한회사</u> | 유한회사             |
| <u>인</u>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 |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  |
| 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       | 한회사등"이라 한다)인     |

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유한회사에</u> 한정한 다.

#### ② (생략)

-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③ ㅈ (생 략)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 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생략)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 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 <u>유한회사등으로</u>                                     |
|--|
| <u>유한회사등에</u>                                      |
| ② (현행과 같음)<br>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③<br>(현행과 같음)<br>④ |
|  |
| <br><br><br>가. (현행과 같음)                            |
| 나<br><br>- <u>유한회사등</u>                            |
| 다  |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 사반

 ⑤ ~ ⑨ (생 략)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 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 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 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 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

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③ ~ ⑦ (생 략)

있다.

| 11 6 7 1 0          |  |  |  |
|---------------------|--|--|--|
|                     |  |  |  |
|                     |  |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  |
| 세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  |  |  |
| (현행과 같음)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뒤                 |  |  |  |
| <u>유한</u>           |  |  |  |
| <u>회사등</u>          |  |  |  |
|                     |  |  |  |
|                     |  |  |  |
|                     |  |  |  |
|                     |  |  |  |
| <u>.</u>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  |

유하히사듯-----